■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개정 2022. 7. 27.>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22조제5항 관련)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소방용품의 구분			수 량
소화기구	소화기	대형	2개
		중・소형	50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20개
	자동확산소화기		50개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0개
	간이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100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100개
		소공간용 소화용구	100개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5개
소화약제		분말(20kg)	20개
		포 등 액체(20L)	20개
		기체(50kg)	10개
		그 밖의 소화설비용 소화약제	20개
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100개
		차동식분포형	20개
		보상식스포트형	20개
		정온식감지선형	1,000m
		정온식스포트형	30개
		이온화식	30개
		광전식스포트형	30개
		광전식분리형	12개
		광전식흡입형	12개
		복합형	20개
		단독경보형	20개
		불꽃	20개
발신기			50개
경종			50개
중계기			5개
수신기			회선수 20회선(P형은 20회선 또는 5개)
가스누설경보기			30회선(분리형은 1개 이상)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30개(대형은 10개)
피난사다리		20개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20개
지지대		25개
구조대		1개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50개
	개방형	50개
유수제어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
	일제개방밸브	2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10개
가스관선택밸브		10개
소방호스		50개
공기호흡기		20개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1개
소화전	옥내소화전 방수구	50개
	옥외소화전	5개
관창		50개(특수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10개)
누전경보기	변류기	20개
	수신부	20회선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소방용품의 구분	수 량
축광표지	50개
예비전원	50개
비상콘센트설비	10개
표시등	50개
소화전함	10개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100개
소방용전선	100m
탐지부	50개
지시압력계	100개

공기안전매트	5개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릴리프밸브, 푸트밸브)	10개
소방용스트레이너	10개
소방용압력스위치	50개
소방용합성수지배관	20개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0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2개
소화설비용헤드(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50개
소방용흡수관	10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10개
방수구	50개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수량 이하로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별표 7 제22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최소 신청수량은 소방청장이 정한다.